Ⅳ 지속가능 공시제도 국내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현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 공시는 현재 자율공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의무화되며 2030년 전 상장회사로 의무공시가 확대될 예정이다.[46] 또한 ISSB의 지속가능 재무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이 올해 2분기 말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제도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Ⅳ-1〉 지속가능성 경영보고서 연도별 자율공시 법인 수

(단위: 개 사,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12월
자율공시 법인 수	8	14	20	38	78	128
증가(증가율)	-	6(75)	6(75)	18(90)	40(105)	50(64)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2. 12. 2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의 확산과 더불어 지속가능 공시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속가능 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8개에 머물던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는 이후 자율공시임에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1년 말에는 128개 회사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 참조). 그리고 자율공시 기업 중에서는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2〉 참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공시한 35개 회사를

4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은 대부분 GRI 표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SASB, TCFD, UN 지속가능발전(SDG) 등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Ⅳ-3〉 참조).

〈표 Ⅳ-2〉 기업규모별 지속가능 공시 현황

(단위: 개 사, %)

자산(연결 2021년 12월 말 기준)		2021년	2022년(기업 수)	2022년(비중)
대규모 법인	100조 원 이상	11	12	9
	10~100조 원	28	45	35
	2~10조 원	28	56	44
2조 원 이상		67	113	88
2조 원 미만		11	15	12
총 합계		78	128	100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2. 12. 2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표 Ⅳ-3〉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공시기준

(단위: 개 사, %)

구분	GRI	SASB	TCFD	UN SDGs	UN GC	기타
기업 수	35	32	27	22	19	9
비중	100	91	77	63	54	26

주: UN SDG=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 GC=UN 글로벌 컴팩트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2.12.2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은 아직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지속가능 보고서가 독립적으로 또는 재무보고서와 통합보고서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표 Ⅳ-4〉 및 〈표 Ⅳ-5〉 참조). 작성기준은 2020년 이전까지 GRI 표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GRI 표준과 함께 SASB와 TCFD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손해보험 대형 3사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이미 통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는 점이다. DB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삼성화재는 2020년부터 그리고 현대해상은 2022년부터 통합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통합보고서는 지금은 ISSB로 통합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에서 제공하는

국제통합보고체계(IR Framework)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통합한다.

〈표 Ⅳ-4〉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 현황(손해보험)

회사명	보고서명	작성기준	발행연도	주기
DB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 통합보고서	G, T	2022, 2021	매년
		G, I, T	2020	매년
		G, I	2019~2016	매년
	DB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15~2011	매년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통합보고서	G, T	2022~2020	매년
	삼성화재보험 지속가능영영보고서	G	2019~2013	매년
		G	2012	격년
		G	2010	격년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 통합보고서	G, S, T	2022	격년
	현대해상 지속가능보고서	G	2020	격년
		G	2018	격년
		G	2016	격년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S, T	2022, 2021	매년

주: G=GRI, I=IIRC, S=SASB, T=TCFD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자료실 지속가능 보고서 현황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4대 금융지주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작성기준으로는 TCFD, SASB와 GRI 표준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2000년 이전까지는 GRI 표준이 가장 많이 쓰이는 작성기준이었으나 이후 지속가능 보고에서 투자자 관점의 재무공시 측면이 확산되면서 TCFD와 SASB 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추세이다.

〈표 Ⅳ-5〉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 현황(생명보험)

회사명	보고서명	작성기준	발행연도	주기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S, T	2022	매년
		G, S	2021	매년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22, 2021	매년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 ESG 보고서	G, T	2022	매년
	삼성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21~2012 (2013 제외)	매년
	삼성생명 통합보고서	G	2013	매년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S, T	2022	매년
		G, S	2021	매년
		G	2020~2011	매년

주: G=GRI, S=SASB, T=TCFD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자료실 지속가능 보고서 현황; 교보생명 홈페이지

현재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초기 단계로 Scope 1과 2에 대한 공시도 일부 회사에 국한되며 특히 Scope 3 배출량은 극히 일부 선도회사만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공시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 산업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규제 정비 시 고려사항

IFRS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일반 공시기준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의견수렴을 거친 수정안을 2023년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TCFD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이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온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 재무공시에도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2025년 단계적인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가 예정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정비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 공시 제도를 만드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기준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은 제조업 위주로 탄소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공시 관련 부담을 높이면서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국제기준과 해외 공시규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속가능 요소가 재무공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 관련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가.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 재무공시와 이중 중요성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던 비재무정보는 정책전환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 정보에 기반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점점 더 중요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주는 위험과 기회 등 재무적 영향을 포함하도록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기존 NFRD를 CSRD로 개정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앞으로 발표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기준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전환 과정에서 기업에 주는 위험과 기회가 투자자에게 유용하면서 비교가능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는 SEC 기후 관련 재무공시와 CSRD 모두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 공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단일 중요성과 이중 중요성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 중심의 전통적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정비하는 미국 SEC와 달리, GRI 표준이 토대인 유럽의 ESRS를 따르는 CSRD는 이중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가능 공시의 본래 목적, 즉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외부효과를 공시하는 기능을 간과하지 않는 장점과 함께, 투자자 관점의 재무적 중요성을 더한 지속가능 공시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해관계자에 중심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자 중심의 '재무공시'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찾아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존 지속가능성 공시 기반 위에 투자자 관점의 재무적 중요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관점의 공시는 지속가능성 요소 중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이 공시되므로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공시되지 않거나 그린워싱 등의 오도 가능성도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지

속가능 공시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단일 중요성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가 줄어들면 공시 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를 시행 중인 대다수 우리 기업이 이미 GRI 표준에 기반한 영향 중요성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익숙한 상황이며 여기에 TCFD 권고안의 재무적 중요성을 더하여 공시 중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행 자발적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탄소중립 경제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 정보의 재무공시 통합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당장 지속가능 정보를 기존 재무공시에 통합하는 방안은 지속가능 정보의 인식과 측정 문제 그리고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이에 따른 법규 리스크 등 실무적 관점에서 아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킬 우려가 있다.

나. 보고의 형태

TCFD는 권고안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를 기존의 재무제표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ISSB도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에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의 기간과 연결범위 등을 기존 회계공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기존 재무공시와 지속가능 공시를 수렴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 관련 공시 내용을 재무제표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속가능성 공시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정보와 이질적인 정성적 지표가 많다. 현행 재무제표 공시에서도 투자자에게 반드시 중요한 정보라면 재무제표 주석(Note)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 공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주석으로 포함되는 것이 투자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무공시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는 주석도 그 신뢰성에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지속가능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면 기업은 법규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과 규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 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려 하고 있다. 우선 ISSB는 지속가능 공시를 기존 재무보고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지만 보고 형태나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에 내용을 담아 다양한 형태

로 공시가 가능하며 특히 재무보고와 상호참조를 하면 별도 보고서의 형태로도 지속가능 공시를 허용한다.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도 재무제표의 주석 형태의 공시방안과 함께 연차보고서의 경영진 의견인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섹션을 통한 지속가능보고를 선택지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시 기업은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 EU의 지속가능 공시기준(ESRS)에서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재무제표와 별도로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경영진 보고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규제의 정비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형태와 보고 위치 그리고 재무제표와의 연관성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가용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와 이로 인한 공시 기업의 법규 리스크를 비롯한 공시 부담과 함께 지속가능 공시 정보의 재무제표 공시 포함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6〉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규제 보고형태

공시기준·규제	보고양식	재무제표와 관계
ISSB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	상호참조
SEC	재무제표 주석 또는 MD&A[1)]	-
ESRS	경영진 보고서 내 지속가능보고서 타이틀로 분리	재무제표와 분리

주: 1)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자료: IFRS(2022a); SEC(2022); EFRAG(2022c)

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는 기업활동의 안 좋은 외부효과를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노출시켜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등의 방식을 통하여 내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투자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직·간접 배출량 공시는 지속가능성 측면과 재무공시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중요한 공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시 정보의 가용성, 특히 Scope 3 공시를 위한 공급망 배출량은 인식과 측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정보의 품질 측면에서도 공시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표 Ⅳ-7〉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규제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요구사항

공시기준·규제	Scope 1, 2	Scope 3	비고
ISSB	의무	최소 1년간 면제	-
SEC	의무	중요한 경우 배출량 목표를 설정한 경우	Scope 1, 2 인증
ESRS	의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외	집약도 공시

자료: IFRS(2022a); SEC(2022); EFRAG(2022c)

특히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서 간접배출의 비중을 고려하면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보험 및 금융회사 등은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나타난다.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 논의과정에서도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도입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아직 가치사슬 관련 Scope 3 측정 및 공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되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피조항(Safe harbor)과 유예를 통하여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공시 의무를 철저히 부과하는 Scope 1과 2 배출량과 달리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ISSB는 최소 1년간 Scope 3 배출량 공시를 면제하고 공급망 내 Scope 1, 2 공시를 통하여 Scope 3 배출 관련 데이터 수집과 추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 SEC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에서도 Scope 1, 2 배출량은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중요한' 경우와 Scope 3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SEC 규칙안은 Scope 3 배출 관련 데이터 자체의 낮은 신뢰성을 감안하여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 보고'로 간주하지 않는 안전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U의 지속가능 공시기준(ESRS)은 Scope 1, 2, 3 공시를 모두 요구하면서도 Scope 3의 경우, 관련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가용 데이터의 확보 문제는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 특히 Scope 1, 2 공시가 정착되면서 시간에 걸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속가능 공시기준과 규제에서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위한 데이터 품질도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함께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ISSB는 지속가능 공시 작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Scope 3 배출량 공시 이행 및 적용 관련 지침을 개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 지침에 Scope 3 공시범위의 결정 방법과 산업별로 관련성이 높은 Scope 3 배출 카테고리를 식별하는 방법 등을 담기로 하였다.

2025년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와 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Scope 1, 2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는 데이터의 가용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빠른 시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Scope 3 공시는 아직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 정도가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치사슬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하고 측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탁·협력회사로 가지거나 하청구조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공급망의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와 함께 공시 기업에 Scope 3 배출량 데이터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민감한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유도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공시 관련 고려사항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사업모형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부채와 자산 양 측면에서 모두 노출되어 있다. 보험인수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은 보험금 지급에 따른 부채 측면에서 그리고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보유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은 자산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기후위기의 물리적 리스크는 자연재난 등을 통하여 보험인수 측면으로, 전환 리스크는 자산가격 변동을 통하여 자산운용 측면으로 영향을 주로 미치게 되어 지속가능성 요소는 보험회사의 사업모형과 관련성이 높아 지속가능 공시는 보험산업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제도 관련 논의는 보험산업의 사업모형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의 위험과 기회는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다른 기관 투자자나 자산 운용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장기투자에 특화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듀레이션 측면에서 다른 금융회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과정에서 Scope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은 GHG 프로토콜의 Scope 3 배출 인벤토리 중 카테고리15(투자)의 금융 배출(Financed Emission)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진 다른 금융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인수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는 보험산업에 특화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CAF(2022)와 NZIA(2023)에서 상술하였듯이 보험관련 배출량(IAE) 공시는 GHG 프로토콜 Scope 3 인벤토리 중 카테고리15(투자)에 포함시켜 합산하게 되면 정확한 배출량 공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PCAF는 보험관련 배출량 공시 시에 투자 항목에 공시하되 반드시 주석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은 GHG 프로토콜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온실가스 Scope 3 배출량 공시 관련 논의 시에는 금융업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세밀하게 구분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산업의 공시 관련 특성이 이미 PCAF를 통하여 나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지속가능 공시 정비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공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Scope 1과 2 배출량에 대한 공시도 일부 회사에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가능 공시가 의무화되면 배출량 공시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지금부터 적어도 Scope 1과 2에 대한 배출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출량 공시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Scope 1 및 2 배출량에 익숙한 보험회사는 Scope 3 배출량의 인식 및 측정 방안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Scope 3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고유의 사업모형인 자산운용과 보험인수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에 대한 실행 과정에 대한 공시가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므로 보험회사는 과학적 기반의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보험

회사는 금융배출과 보험관련 배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기업과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 방식을 통하여 Scope 3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면서 지속가능 공시 측면에서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